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민속문화재분과 회의록

- 일 시 : 2019. 5. 15.(수) 09:30
- 장 소 : 켄싱턴리조트(강원도 고성군)
- 출석위원 : 석대권(위원장), 강옥희, 남해경, 이향미,
정귀원, 홍형순(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거창 동계 종택 주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	아산 외암마을 내 몽골텐트 설치	
3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	
4	보성 이준회 고택 등 주변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	
5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노후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6	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3동 신축	
7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마당정비 및 조경공사	
8	남양주 동관택 주변 소매점 신축	
9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	
10	예천 남악종택 안채, 문간채, 대문채 보수	
11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별채·조림	
12	세종 흥판서택 주변 공동주택 신축	
13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허용기준 마련	

심 의 사 항

1. 거창 동계 종택 주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남 거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주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창 동계 종택 주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4구역(지정구역에서 약 350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 4구역 : 거창군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처리(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거창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5호 「거창 동계 종택」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50-1
 - (3) 신청위치 :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거리 478-1 외 2개소
 - (4) 신청내용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어울림 쉼터 조성
 - 부지면적 : 6,900m²
 - 조성시설 : 오토캠핑장(수용차량 11대), 다목적구장(막구조물, 높이 5m×길이 40m×2식), 농산물판매장(막구조물, 높이 4.82m×22m×1식)
 - 차폐·경관 식재 : 교목류(소나무 등) 78주, 관목류(화살나무 등) 3,476주
바닥잔디 1,302m²
 - 연결도로 정비 : 총 연장 108m, 폭 6m
 - 창말1길 연결로(정비) : 연장 63m, 전통담장 22.67m, 전통대문 1식
 - 금원산길 연결로(신설) : 연장 45m, 전통담장 62.89m, 전통대문 1식
- ※ 전통담장과 대문은 연결도로에 편입된 기존 주택의 담장과 대문 복구용임
- ※ 위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총 9개 사업내용 중 대상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된 상기 2개 사업이 현상변경 허가대상임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24.)

- 문화재와 사업 신청지는 지형 조건과 위천초등학교 건물 등 지형지물로 인해 시각적으로 단절된 곳에 위치함
- 사업 내용에 과도한 토공이나 구조물 설치 등을 포함하지 않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 단, 사업 내용에 포함된 연결도로의 전통담장, 대문 등 시설물과 오토캠핑장 주변 차폐·완충식재, 다목적구장 주변 쉼터(막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아산 외암마을 내 몽골텐트 설치

가. 제안사항

충남 아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내 몽골텐트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아산 외암마을 내 몽골텐트 설치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외암마을의 북서 방향 끝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내 시설물 설치행위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아산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 소재지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 (3) 신청위치 :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208-1
- (4) 신청내용 : 몽골텐트 설치
 - 설치목적 : 미세먼지 및 우천 시 단체관람객(유치원 및 초·중·고) 휴게 및 식사 장소로 활용
 - ※ 2022년 아산 외암마을 역사관 및 초가이영 전수관, 외암인문학서당 등 건립 시까지 한시적 운영
 - ※ 관람객 현황(2018년 기준) : 전체관람객 374,997명, 단체관람객(유·초·중·고) : 146,933명
 - 텐트규격 및 설치개수 : 5m×5m, 최고높이 4.6m, 7개
 - ※ 절토 높이 0.75m, 절토량 140.87^m
 - 수목이식 : 총 11주(소나무 7, 감나무 3, 유스커스나무 1)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2.)

-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외암마을 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5m)×세로(5m), 높이 2.3m 규모의 몽골텐트 7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편의시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방문객(유치원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설치장소가 ‘아산외암마을 민속관’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진입부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시각적 간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2022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몽골텐트 설치 시 절·성토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수목에 대한 이식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텐트형태에 대해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설치할 것

3.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재신청)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성 열화정 주변 단독주택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56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 1구역 : 개별심의
- ※ 2018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10.16.)에서 역사문화환경 저해로 부결된 사안으로, 신청 위치를 조정하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62호 「보성 열화정」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30
-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신축
 - 신청위치 조정 : (당초) ○○○ → (변경) △△△
 - ※ 당초 신청부지에서 산 아래쪽으로 약 15m 이동
 - 건축규모·구조
 - 당초

구 분	연면적(m ²)	높이(m)	구 조	지붕·벽체
단독주택(2층)	102.89	4.7	일반목구조	태양광모듈, 동판, 사이딩마감
별채	24.37	3.7	일반목구조	태양광모듈, 동판, 사이딩마감
창고	9.25	2.45	일반목구조	폴리카보네이트, 함석판
계	136.51			

- 변경

구 분	연면적(m ²)	높이(m)	구 조	지붕·벽체
단독주택(1층)	75.83	3.66	일반목구조	동판기와, 목재사이딩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23.)

- 신청 건축물은 문화재로부터 56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형의 차이도 있고 문화재 사이에 고목과 대나무 숲이 있어 직접 보이지는 않음
- 본 신청지는 1구역으로 원지형 보존구역이고, 건축안은 현대건축의 개념을 가진 건축물로, 이전 문화재위원회에서 바로 위의 대지에서 건축신청하였으나 경관상의 이유로 부결된 내용 있음
- 누정건축이 가지는 경관과 조망점과 관련이 있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건축형태에 대해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및 설계보완 후 재심의

4. 보성 이준희 고택 등 주변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전남 보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제160호 「보성 이준희 고택」 주변 강골마을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성 이준희 고택 등 주변 강골마을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의 변경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의 위치와 벽면 구조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2017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12.12.)에서 가결된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 신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보성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57호 「보성 이정래 고택」, 제159호 「보성 이진래 고택」, 제160호 「보성 이준희 고택」
 - 소재지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14 외
 - (3) 신청위치 :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일원
 - (4) 신청내용 : 향토문화관 건립 허가사항 변경
 - 당초 허가사항
 - 신청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396-1(2구역) * 지정구역에서 약 150m 이격
 -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499.5㎡, 높이 7.25m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사이딩판넬(흰색), 기와지붕+평슬라브
 - 변경사항
 - 신청지: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397-1, 397-2(1구역) * 지정구역에서 약 75m 이격
 - 건축규모: 지상 1층, 건축면적 494.91㎡, 높이 7.1m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벽돌쌓기+투명복층유리, 기와지붕+평슬라브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축규모 축소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10m 이내 변경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처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23.)

- 마을공동시설(강골마을 체험교육장) 전면에서 후면의 전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내용으로, 문화재로부터 75m 거리에 위치해 있음. 변경 신청지 주변에는 대나무 숲과 노거수가 있고, 문화재와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나무 숲으로 인해 보이지 않음. 건축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건축면적은 494.91㎡, 높이는 7.1m이며, 주된 용도는 강골마을에서 수집된 유물 전시임
- 본 건축물은 문화재와 보이지는 않으나, 변경 신청지 주변에 마을경관을 형성하는 대나무 숲과 노거수가 위치해 있어, 이를 제거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 신청지는 인접한 마을길과 단차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도 비효율적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5.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노후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노후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함양 허삼들 고택 주변 노후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1구역(지정구역에서 약 72m 이격)으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 1구역 : 개별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들 고택」
 - 소재지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196
-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 ○○○
- (4) 신청내용 : 노후 단독주택 철거 및 신축
 - 부지면적 : 116㎡
 - 기존주택 : 지상 1층, 연면적 39.67㎡, 목조/기와
 - 신축주택 : (건축규모) 지상 2층, 연면적 95.52㎡, 높이 7.65m
(건축구조) 일반철골조(1층), 경량철골조(2층), 점토벽돌(벽체), 징크무늬 판넬(지붕)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24.)

- 사업 신청지는 지형 조건과 기존 주택들로 인해 고택으로부터 시각적으로 단절된 곳에 위치함
- 협소한 부지 조건에 따라 건축 면적도 제한적인 소규모 개축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3동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보통리 고택 주변 단독주택 및 소매점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240m)과 4구역에 걸쳐있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 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6호 「여주 보통리 고택」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90-2번지 일원
- (3) 신청위치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
- (4) 신청내용 : 단독주택 3동 신축

구분	대지면적 (m ²)	건물용도	층수	연면적 (m ²)	구조	외장마감
A동	790.44	단독주택	지하1층	86.917	철근콘크리트구조	노출콘크리트
		단독주택	지하2층	165.682		
		단독주택	지하3층	20.815		
		소매점	지하3층	260.472		
		합계		533.886		
B동	496.72	단독주택	지하1층	176.392	철근콘크리트구조	노출콘크리트
C동	560.12	단독주택	지상1층	18.24	철근콘크리트구조	높이 2.4m 노출콘크리트
		단독주택	지하1층	139.96		
		합계		158.206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6.)

- 고택은 마을의 주산인 왕지봉 서측자락에 정남향하여 자리잡고 있으며, 신청 대상지는 지정구역 경계에서 약240m 떨어진 1구역(개별심의/69m², 2%)과 4구역(여주시 도시계획 조례적용/2,991m², 98%)으로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진출입 도로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신청 대상지는 고택의 중심권역을 벗어난 동북측의 능선 너머로 고택에서는 조망되지 않으며 지하 1, 2, 3 층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위를 성토(약 6.7m)하는 등 주변경관을 유지하는 측면과 함께 조경을 계획하고 있어 고택 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마당정비 및 조경공사

가. 제안사항

경북 경산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내 마당정비 및 조경공사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천 매산고택 내 마당정비 및 조경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24호 「영천 매산고택과 산수정」
 - 소재지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번지
- (3) 신청위치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1020번지(문화재 지정구역)
- (4) 신청내용 : 마당 정비 및 조경공사
 - 사업면적 : 827m²
 - 절토량 : 460m³, 성토량 : 124m³, 마사토다짐 827m²
 - 수목식재 1,724주(구상나무, 반송, 소나무 등)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3.)

- 마당은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층과 구배를 만들어 주어야 함
- 조경수종은 고택과 경관에 조화되는 식재가 요구됨
- 마당공간 조경처리는 조경계획도를 참고하여 수정함과 지시한 대로 시행함이 좋겠음

- 마당의 기존 앵두나무는 이식하여 유지하고 금회 식재 수종 중 백송(외송)은 제외하는 것이 좋겠음
- 마당1의 백철쪽 및 수목의 위치는 마당을 조금더 확보하는 형태로 식재
- 마당1의 우측부는 모란을 식재를 10주로 하여 3곳으로 하여 경관과 어울리도록하며 뒤쪽의 이팝나무는 작은 3주보다는 큰 1주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음.
- 마당2의 기존 배롱나무 2주, 향나무1주, 산수유1주는 가지치기하여 작게 유지하도록 함
- 마당2의 진입부인 동백나무 2주는 제외하고 계단 우측부에 매화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음.
- 고택 외부의 기존 큰 배롱나무와 기존 산수유 2주는 가지치기 하여 유지하는 것이 좋겠음
- 마당2의 철쪽은 교목 및 전통건물과 어울리는 원추리로 식재하는 것이 좋겠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조정 수종 및 식재 계획 등 문화재 진정성 저해

8. 남양주 동관덕 주변 소매점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남양주 동관덕」 주변 소매점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동관덕 주변 소매점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한변의 길이가 32.1m, 이격거리 24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9호 「남양주 동관덕」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286번지
- (3) 신청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
- (4) 신청내용 : 소매점 신축
 - 대지면적 : 676m²
 - 건축면적/연면적 : 327.75m²/590.92m², 높이:10.5m(2층)
 - 구조 : 일반철골조(판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5. 6.)

- 고택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동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청 대상지는 지정구역 경계에서 약 240M 떨어진 4구역(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적용)에 기존 시설물(가설물 및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하고 있음
- 신청지는 고택의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볼 때 중심권역을 벗어난 산기슭에 가려서 조망되지 않으며 주변에는 기존 건물(2층)들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택주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9.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

가. 제안사항

경북 안동시 풍천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주변 ‘육상골재 채취’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3구역(이격거리 150m)에 해당되어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일원
- (3) 신청위치 : 경북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 ○○○(6,141㎡)
- (4) 신청내용 : 육상골재 채취 9,370㎡
 - 신청면적 : 6,141㎡
 - 굴착토량 : 20,591㎡(5m 깊이, 2.6m 이내 표토는 야적 및 추후 복구)
 - 세부내용 : 육상골재(답) 채취 후 인근 골재선별,파쇄 사업장의 사토로 복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18.)

- 안동 하회마을의 하천 퇴적부지(농지)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역사성, 장소성에 대한 훼손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예천 남악 종택 내 안채, 문간채, 대문채 보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 종택」 내 안채, 문간채, 대문채 보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예천 남악 종택 내 문화재 보수정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대상은 지정문화재에 해당하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예천군수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480호 「예천 남악 종택」
 - 소재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248-1
- (4) 신청내용 : 안채, 문간채, 대문채 보수
 - 우익사 쪽마루(540mmX2,460mm) 설치(h:540)
 - 좌익사 기존 쪽마루(540mmX4,920mm) 높이(h:830→735,680) 단 조정
 - 문간채 창고 상부 재사벽(2,250 X 460mm) 설치
 - 대문채 창고 판문(900 X 1,700mm) 및 판벽(1,360 X 1,820mm)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4. 25.)

- 국가민속문화재 제248호 예천 남악종택 내 안채 좌·우익사의 쪽마루 보수 및 중문채 일부 벽체 정비, 대문간채 창고 배면에 판문과 판벽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중문채 벽체는 과거 소실된 흔적이 남아 있어 원형 회복 차원에서 정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대문간채 창고의 판문과 판벽 설치에 생활편의시설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채 좌·우익사의 쪽마루 보수는 원형 유지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채 쪽마루 보수는 원형복원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므로 제외

11.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

가. 제안사항

충북 음성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음성 공산정 고택 주변 벌채·조림 사업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개별심의, 이격거리 400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3호 「음성 공산정 고택」
 - 소재지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585-3
- (3) 신청위치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리 ○○○
- (4) 신청내용 : 벌채·조림
 - 규모 : 입목벌채 4.92ha, 낙엽송 4.92ha(14,760본 식재)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4.16.)

- 산림 6.77ha 중 4.92ha에 대하여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낙엽송 묘목으로 조림하는 사업임
- 지형조건으로 인해 공산정 고택에 미치는 시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인접한 도지정 문화재(음성 경녕군 부인 김씨 묘소, 이격거리 약 140m)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시·도 문화재위원회 의견수렴 후 재심의

12. 세종 흥판서댁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세종시 부강면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38호 「세종 흥판서댁」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세종 흥판서댁 주변 공동주택 신축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4구역(세종시 도시계획 조례(건축면적 330㎡초과), 이격거리 408m)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38호 「세종 흥판서댁」
 -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385
- (3) 신청위치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
- (4) 신청내용 : 공동주택 신축(대지면적 1,558㎡)

구분	대지면적 (㎡)	건물용도	층수	높이 (m)	건축면적 (㎡)	연면적 (㎡)	구조	외장마감
A동	785	공동주택	지상5층	15.05	356.41	1,307.576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타코+판석마감
B동	772.5	공동주택	지상4층	15.05	348.85	1,267.596	철근콘크리트 구조	스타코+판석마감

라.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전문위원 ○○○/2019. 4. 22.)

- 현상변경을 위한 허가신청 사업지는 문화재보호 4구역에 속하는 곳으로 흥판서댁으로부터 약 480미터 떨어져 위치함
- 흥판서댁과 사업지 사이에는 부강역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가 속한 곳은 철로를 경계로 남쪽지역이고 이미 상업시설과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이 밀집된 곳임
- 또한 사업지와 인접한 필지에 사업지보다 높은 88아파트가 있는 상태이므로 문화재의 경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북 영양군 영양읍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마련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재로 신규 지정('17.12월)된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 소재지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원당길 2-1(하원리 205-1)
- (2) 검토내용
 - 국가민속문화재(고택) 경관관리 중점지표
 - 장소성(원위치), 왜소화, 조망성(진입부, 내·외부), 마루선
 - 허용기준(안)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영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 의견수렴 기간 : 2019. 1. 21.~ 2. 10.
- 의견수렴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마. 현지조사 의견(문화재위원 ○○○/2019. 4. 19.)

- 영양군에서 제출한 당해 문화재 주변의 허용기준(2구역) 중 민가부분을 역사 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1구역으로 강화함이 좋겠음.
- 또한 전면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3구역으로 제출한 문화재 남쪽 하천 건너편에 대하여 2구역으로 조정하고, 공통사항에 태양광설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이 좋겠음

바. 의결사항

- 부결
 - 조망성에 따른 허용기준 재검토할 것